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가. "경리관"은 2014. 5. 28.(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음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

###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회계관" 관한 규정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함 (안 제11조제3항)
- 나.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변경(안 제13조제2항제2호)
- 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마.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바.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변경(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전화 : 02-901-6672, FAX: 02-901-6660, E-mail: gorilafirst@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gangbuk.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